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2. 4. 21.(목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	담당자	• 과장 김연희, 사무관 이지연, 주무관 임상현 • ☎ (044) 201-4989, 4986	
협업기관	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	담당자	•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장 김승현, 차장 오치연·우기명 • ☎ (031) 738-4528, 4965	
보도일시		2022년 4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어린이집 · 병원 등은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 개선해야 정부 지원 가능

“우리 아이 화재 安心 시설” 로 탈바꿈한 강서어린이집 「현판식」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4월 22일(금) 11:00 서울 강서어린이집에서 엄정희 건축정책관, 김용배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, 김승현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행사는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집·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올해 종료 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.
- 정부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제천 복합건축물(‘17.12)·밀양 세종병원 화재(‘18.1)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,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(‘19 ~ ‘22년 말)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.

-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,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,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, 국가·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1/3을 지원한다.

□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어린이집은 '03년에 준공되어, 39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1층을 제외한 2층, 3층, 옥탑이 가연성 외장재*(드라이비트)로 건축되었다.

* 가연성 외장재 :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·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

보강전	보강후
	
 <p data-bbox="387 1547 561 1576"><가연성 단열재></p>	 <p data-bbox="1027 1547 1201 1576"><준불연 단열재></p>

* 보강내용: 가연성 외장재(드라이비트-스티로폼) → 준불연 외장재(저방사 복합단열재+석재마감)

** 준불연재료: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가연성재료 보다 내화성이 높은 재료

○ 이 사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고, 준불연 단열재로 보강하여 석재로 마감함으로써, 화재 시 대피 시간*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.

* 소방청의 소방차 현장 도착 목표 시간은 7분이나 준불연재료로 마감시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확보시간은 9분 이상으로 기대됨(가스유해성시험 KS F2271기준)

- 다만,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에 공사가 진행되었다.

○ 또한 외장재 교체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로 보강하여 화재안전성능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도 확보하였다.

□ 한영실 어린이집 원장은 “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과 외관도 개선 되어 기쁘고, 다른 어린이집도 하루빨리 참여하길 바란다”고 했다.

□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방교육에 함께 참여한 후,

○ “오늘 소방교육과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강서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,

- 외장재 교체,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통해 소중한 아이들의 화재 시 탈출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”임을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, 임상현 주무관(☎ 044-201-4989,498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추진배경**

- 제천 복합건축물(‘17.12.), 밀양 세종병원 화재(‘18.1) 등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마련(19.4.)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정(‘20.5. 시행)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규정 신설

□ **주요내용**

- (사업내용)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(~’22.12.31.)으로 지원
- (사업대상) 피난약자 이용시설,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요인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

【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】

분류	세부용도	화재취약요인		
		가연성 외장재	스프링클러 미설치	필로티 구조
피난약자 이용시설	의료·노유자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원	●	●	무관
다중이용업소 (연면적 1,000㎡이하)	고시원, 목욕장, 산후조리원, 학원	●	●	●

* 3층 이상으로서,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
 다만,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써 연면적 1천㎡ 이하인 경우에 한함

- (지원수준) 총 공사비 4천만 원 이내, 국가·지자체 각각 1/3 지원
- (별칙) 보강 미실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- *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 발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
□ **보강방법**

- 건축물의 구조 형식 등을 고려하여 (간이)스프링클러, 준불연 외장재 교체 등 보강공법을 건축물 소유자가 「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에 맞게 선택